

상주시 공고 제2022 - 87호

「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19일

상 주 시



「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하수도사업 관련 수입금 마련 지출시 상위 법령(지방공기업법)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수입금 마련 지출 규정 삭제(안 제14조)
- 수입금 마련 지출의 대상 조건이 법적 근거 없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

3. 상위 관계법령

법령조항	주요내용	비고
지방공기업법 제27조(수입금 마련 지출)	· 관리자는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 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음.(※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.)	

4. 개정조례(안): 붙임참조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8일까지 상주시장(참조: 상하수도사업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나.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일반우편: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-27(상하수도사업소)
- 2) 전자우편: jaesim@korea.kr
- 3) 팩스: 054-536-2566

6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(☎054-537-550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경상북도 상주시 홈페이지(www.sangju.go.kr→행정정보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: 상주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 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